

조선시대 관인¹⁾

글 | 김정임(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관인(官印)’은 국가 기관과 관리들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인장으로 조선시대의 중요한 국가 통치수단의 하나였다.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인신(印信)’이라고 불렸으며,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나 중요한 문서에 사실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조선왕조의 관인제도는 개국 이후 태종과 세종에 의해 수차례의 보완을 거쳤으며, 1485년(성종 16)에 기존의 제도를 약간 수정하여 『경국대전』의 「이전(吏典)」에 규정된 중앙 및 지방 관제에 따라 「예전(禮典)」에 관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관청이나 관원의 계급에 따른 관인의 크기 등 관인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었으며, 『대전통편(大典會通)」과 『대전통편(大典通編)』으로 법전을 보완·개편할 때에도 동일한 규정으로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시대 관인제도의 큰 특징은 관청이나 관직의 품계에 따라 관인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의 1품 관청의 인신은 넓이가 2촌 9푼, 2품 관청은 2촌 8푼, 3품 관청은 2촌 5푼, 4품 관청은 2촌 3푼, 5~6품 관청은 2촌 1푼, 7품 이하 및 토관직의 도무사·도할사는 모두 길이가 1촌 3푼이다.²⁾ 이처럼 관인은 『경국대전』 등 법전의 관인 제작 규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로 아주 엄격히 지켜지지는 못하였다.

『경국대전』의 관인 크기 규정

연대	품계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이하
『경국대전』 1485년 (성종 16)		2寸 9分	2寸 8分	2寸 5分	2寸 3分	2寸 1分	2寸 1分	장(長): 1寸 8分 광(廣): 1寸 3分

1) 이 글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관인 고찰」(『조선왕조의 관인』 특별전, 2009년)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수정하였다.
2) 『경국대전』 권5 「예전(禮典)」, 용인(用印)
3) 낙인을 사용했던 부신은 선전표신(宣傳標信), 개문표신(開門標信), 폐문표신(閉門標信), 영표(令票), 포도대장전령패(捕盜大將傳令牌), 마패(馬牌), 통부(通符), 위장패(衛將牌), 부장패(府將牌), 감군패(監軍牌), 부신(信符), 한부(漢符), 자지(慈旨), 내지(內旨), 휘지(徽旨), 문안패(問安牌) 등이 있다.

관인의 종류

조선시대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관인들은 관청명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명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국왕의 결재여부와 관문서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새긴 관인이 있다. 이외에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사용하는 낙인(烙印)도 쓰임새는 다르지만 글자를 새겨 찍는 인장의 일종이다.

관청인【그림 1】은 기관을 대표하는 관인이며, 관직인【그림 2】은 해당 관직을 제수 받은 관원이 사용한 관인이다. 관청인과 관직인은 문서를 발행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왕의 결재 여부와 관문서의 종류를 나타내는 관인으로는 ‘계(啓)’자 인, ‘관(關)’자 인, ‘첩(帖)’자 인이 있다. ‘계(啓)’자 인【그림 3】은 국왕에게 보고할 때 올리는 문서에, ‘관(關)’자 인【그림 4】은 동등 이하의 관급(官級) 관청 상호간에 왕복되는 문서에, ‘첩(帖)’자 인【그림 5】은 상위관청에서 7품 이하 관원에게 또는 관청의 기관장이 소속 관원에게 내리는 문서에 찍었다. 또한 대한제국기에는 국왕의 결재 여부를 표시하는 관인으로 ‘가(可)’자 인, ‘문(聞)’자 인이 별도로 사용되었다. ‘가(可)’자 인은 왕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 문서에 찍었고, ‘문(聞)’자 인은 왕에게 아뢰는 문서에 찍었다.

낙인(烙印)【그림 6, 7, 8】은 불에 달구어 사용하는 불도장을 말하는데 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부신(符信, 신분패)이나 호패, 도량형, 군수용 물품에 사용하였다. 특히 궁궐의 출입이나 도성의 야간순찰, 궁궐문·도성문의 개폐, 말의 지급, 위급한 일의 명령, 군대징병(徵兵), 궁성에서의 숙직 등을 증빙하기 위해 패용하는 부신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낙인을 찍어 위조를 방지하였다.³⁾



●【그림 1】관청인 : 성균관인(成均館印), 1857년, 동, 8.5×8.0×10.6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2】관직인 : 병조당상지인(兵曹堂上之印), 1833년, 동, 8.4×8.4×9.9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3】‘계(啓)’자 인, <<정경세 교지>> 중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그림 4】‘관(關)’자 인 조선(朝鮮), 동, 9.7×6.2×4.2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5】‘첩(帖)’자 인 조선(朝鮮), 나무, 9.9×9.4×7.0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6】'통부(通符)' 낙인, 조선(朝鮮), 철·나무, 3.2×1.8×50.7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7】'마(馬)' 낙인, 조선(朝鮮), 철·나무, 2.3×1.7×50.7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8】'어(御)' 낙인, 조선(朝鮮), 철·나무, 1.5×1.5×50.3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㉞ 관인의 제작

조선왕조의 관인 제작과 관리는 예조에 속한 계제사(稽制司)에서 관장하였다. 계제사는 주로 의식·제도·조회·경연·사관(史官)·학교·과거·인신(印信)·표전(表箋)·책명·천문·누각·국장(國葬)·임금의 사당이름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1405년 태조 5년에 설치되어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관인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관인이 주조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관직이나 관청이 신설되거나 증설되어 새로운 관인을 제작하는 신주(新鑄)와 오랜 사용으로 인해 관인의 글씨가 닳아 알아볼 수 없을 때나 국가의 대규모 조사에 따른 관인 정비를 위해 다시 만드는 개주(改鑄)가 있다.

예조에 관인 제작을 의뢰하는 문건이 접수되면 여러 단계를 거쳐 제작되었다. 관인의 제작 절차를 『인신등록』이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대전회통』 등으로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관인이 필요한 관청은 예조에 신규 관인의 주조를 요청한다. 대체로 중앙 관청인 경우 예조에 직접 요청하였으며, 지방 관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상부 관청을 통해 예조에 요청하였다.

둘째, 관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계제사에서 관인 제작의 모든 절차를 총괄하였다.

셋째, 계제사는 교서관에서 받은 인전(印篆, 인장 글씨)을 공조로 보내 관인 주조를 요청하였다.

넷째, 관인이 주조되면 그 관인의 인영(印影, 인장 찍은 면)을 예조에 남겨 후일 진위 판단에 사용하였다.

다섯째,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승정원을 통하여 임금에게 관인 제작 결과를 보고하고 윤허 받은 후에 해당 관청에 관인과 사용허가서를 발송하였다.

여섯째, 해당 관청은 새 관인과 사용허가서가 도착하면 그날부터 새 관인을 사용하였으며, 옛 관인의 인문(印文, 인장 글씨)을 깎아 예조로 올려 보내면 예조에서 녹여 없앴다.

㉞ 관인의 사용과 관리

중앙 관청으로부터 내려 받은 관인은 그 사용과 관리를 매우 엄중히 하였다. 관인을 사용할 수 있는 직급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관문서에 관인을 찍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 한편 관인을 소홀히 관리하는 자와 위조한 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각 관청의 관인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기관의 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관리가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방관으로 관직을 제수 받아 새로 부임할 때는 관인과 부신을 서로 주고받는 교귀(交龜)라는 의식을 거쳤다.

관문서에 관인을 찍는 위치는 문서발행 날짜 이외에 대체로 종이를 덧붙인 곳과 글자를 고친 곳 등 나중에 고칠 위험이 있는 부분에 찍었다.

관청과 관원의 상징인 관인은 관인함(그림 9)에 넣어 소중히 보관되었다. 대부분 검정색 함을 사용하였고, 어보를 비롯하여 국왕이 직접 통솔하였던 기관의 관인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붉은색 함을 사용하였다. 관인함을 곁에 두고 있는 관원의 모습은 그림과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평양감사환영도(平壤監司歡迎圖)》【그림 10】의 평양감사 옆에는 관원의 상징인 검정색 관인함이 위치하고 있으며, 1876년 김기수(金綺秀)가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에서도 '신사인신(信使印信)'이 부착된 관인함을 곁에 두고 소중히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관인은 역사적으로 국정운영의 중요한 도구이자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신표로서 별도의 규정을 통해 조선 말기까지 엄격히 관리·운영되었으며, 이후 국정운영을 근대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관문서를 표준화해 나가며 이에 맞추어 관인도 새롭게 변화되었다. **IN**

● 필자소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며, 「조선왕조의 관인」,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다시 찾은 조선왕조의 의례와 도서」 특별전 등 다수의 전시회를 기획하였다.



●【그림 9】〈별장인신함(別將印信函)〉, 조선, 24.8×24.8×28.8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10】《평양감사환영도》중 〈월야선유도〉(부분), 1745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